

종사자윤리지침



목 차

- | |
|--------------------|
| 1. 종사자 윤리지침 ...2 |
| 2. 시설장의 기본윤리 ...2 |
| 3. 직원의 가본윤리 ...3 |
| 5. 전문가로서의 윤리 ...3 |
| 6. 수급자에 대한 윤리 ...4 |

수정요양원

종사자 윤리지침

수급자에 대한 윤리, 전문직으로서의 윤리

● 종사자 윤리지침

종사자 윤리지침이란 전문직으로서 입소하신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와 급여 제공과 관련된 윤리 등 직원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말한다.

- 수정요양원 종사자는 입소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,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, 사회적·경제적·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.
- 수정요양원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,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윤리지침을 정하여 준수해야 한다.

● 시설(시설장)의 기본윤리

수정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성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의 미래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명감으로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.

- ① 수정요양원은 성별, 연령, 종교, 건강상태 및 장애, 경제상태, 종교 및 정치적 신념,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,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.
- ② 입소시작 및 입소종료, 일상생활, 사회참여, 종교생활, 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.
- ③ 수급자의 잔존기능,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④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⑤ 수급자의 욕구, 문제,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,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.
- 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다.

- ⑦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한다.
- ⑧ 수급자와 그 가족, 그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.
- ⑨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,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⑩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,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.

● 직원의 기본윤리

-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,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어르신의 종교·인종·성·연령·국적·결혼상태·성·취향·경제적 지위·정치적 신념·정신, 신체적 장애·기타 개인적 선호, 특징, 조건,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,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.
- ④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,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.
-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⑥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.

● 전문가로서의 윤리

- ① 어르신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, 지식과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.
- ②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,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- ④ 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,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

● 수급자에 대한 윤리

- ① 어르신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.
- ② 어르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,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한다.
- ③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, 그 이익을 대변한다.
- ④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,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- ⑤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,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.
- ⑥ 목욕서비스의 경우 동성의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 요양원의 운영상 이성의 직원이 불가피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⑦ 문서·사진·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범위와 정보취득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, 정보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또한 서비스 제공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.
- ⑧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르신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⑨ 어르신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,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⑩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.
- ⑪ 어르신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어르신의 이해가 우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